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입법된 시행령 일부 조항 삭제(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제6조제5항 삭제)

제2조제2호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공사 및 공단, 제6조제3항 정보공개 청구의 민원처리, 제6조제5항 종결처리의 경우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삭제

나. 「정보공개법」 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안 제4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안 제3조의2 신설)

- 1) 행정정보의 공표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되는 등 법률 상 용어 변경 사항 반영
- 2)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까지 심의회 설치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

- 3)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4)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
- 5) 개정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해야 하는 정보공개 교육의 주기, 내용 등 교육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다.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확대(안 제4조)

- 1) 계약에 관한 정보 공개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에 규정
-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추가로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에 관한 정보까지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라. 개별 청구에 대한 공개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이 국민 전체에 유용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호라목”을 “제2조제3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법 및 제도 관련 내용
2.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활용방법 등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해 교육이 필요한 사항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정보”를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심사결과,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변경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정보”를 “정보, 제124조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심사결과,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변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1호 중 “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기업”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정보의 사본·복제물을”을 “정보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4호”를 “법 제2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1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 ----- 제2조제3호라목-----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삭 제>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의2(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법 및 제도 관련 내용
	2.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방법 등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내용

	3. <u>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해 교육이 필요한 사항</u> ② <u>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u>정보</u>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u>정보</u>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 ----- ---- <u>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심사결과,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변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u> 나. ----- ----- ----- ----- <u>정보, 제124</u>

다. ~ 마. (생략) 4. ~ 6. (생략) ②·③ (생략)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u>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u> 2. <u>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u>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u>제3항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u>조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심사결과,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변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u> 다. ~ 마.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 -- <u>법 제11조제5항</u>-----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생략)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

1. -----
-- 법 제11조제5항 -----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② (생략)

<신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3항----- 정보를 -----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 제1항 내지 제3항

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u>주민등록번호</u>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심의·조정 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u>행정정보의 공표</u>에 관한 사항 2. (생략)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u>행정안전부장관</u>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제18조(이의신청) ① ----- ----- ----- -----. 1. ----- <u>생년월일</u> ----- -----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심의·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 ----- -----. 1. ----- <u>정보</u>의 사전적 공개----- 2.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 ----- <u>국무총리</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정보공개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2270